

한국밸류 10년투자 재형 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 투자설명서 변경 대비표

변경기준일: 2015.04.24.

항 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	서식 개정	(신설)	9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제 2 부. 5. 운용전문인력	내용 갱신	작성기준일 : 2014.04.30	작성기준일 : 2015.03.20
제 2 부. 8. 가. 투자대상	투자대상 명확화	주1)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. 1. ~2. (생략) (신설)	주1)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. 1. ~2. (현행과 같음) 3. 환매조건부 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)
제2부.13.나.집합투자 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내용 갱신	주1)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,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(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)등에 해당하는 것으로,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,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. [직전 회계년도 : 2013.03.06~2014.03.05] 주2)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,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	주1)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,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(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)등에 해당하는 것으로,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,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. [직전 회계년도 : 2014.03.06~2015.03.05] 주2)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,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

		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. [직전 회계년도 : 2013.03.06~2014.03.05]	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. [직전 회계년도 : 2014.03.06~2015.03.05]
제 2 부. 14. 나. 과세	감면세액 추징 관련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 요건 완화 반영	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 또는 제 3 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	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전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 1.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: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가.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 나.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1천600만원 이하인 거주자 다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(비영리법인포함)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(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외) 2. 제1호 외의 거주자의 경우: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
제3부. 1~3	내용 갱신	<u>제1기(2013.03.06 - 2014.03.05) 기준 작성</u>	<u>제2기(2014.03.06 - 2015.03.05) 기준 작성</u>
제4부.1.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내용 갱신	<u>2014.04.30 기준 작성</u>	<u>2015.03.20 기준 작성</u>
제 5 부. 2. 가. 의무해지	관련 법령 개정내용 반영	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-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/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/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/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/(<u>신설</u>)	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-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/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/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/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/ <u>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(단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</u>

			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)
제 5 부.4.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	내용 갱신	작성기준일 : 2014.04.30	작성기준일 : 2015.03.20
제 5 부. 5.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	서식 변경	(신설)	해당 내용 기재
제 5 부. 6. 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	서식 변경	<u>5.</u> 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	<u>6.</u> 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